

카프 해산 이후 문인들의 검열인식*

김 준 현**

요약

이 글은 카프 검거 및 해산이라는 상징성을 지니는 사건이 어떤 '검열인식'의 형성을 촉발하였는지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열과 검열 주체는 분열되어 있는 사실은 이 연구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독립'이라는 기호가 1930년대에 검열되지 않았던 것처럼, '레닌'이라는 인명이 역시 검열 대상이 아니었던 것처럼, 검열은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띤다. 검열의 기준은 '어떤 기호와 표현이 검열당한다/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완전한 형태로 공표되지 않는다. 나아가서 그렇게 완전한 형태로 검열 기준을 만드는 검열 주체도 매우 드물다. 이에 따라 문인들은 검열의 사례를 예거로 한 일반화를 통해 검열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피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열인식'과 '자기검열'은 창작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카프 해산과 그에 얽힌 여러 사건은 카프 출신 문인들뿐 아니라, 당대 문인들에게 중요한 검열인식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카프 해산은 이러한 점에서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이는 사회주의 문학을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문인들의 문필 활동에도 검열의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검열인식은 매체의 간행자, 문학상의 심사위원들도 불완전하지만 폭넓게 공유하는 분명한 실체를 가진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당대 문학 장에 속한 문인들이 '자기검열'과 '개작'을 수행하는 조건을 형성하였다.

주제어 : 카프, 자기검열, 개작, 검열인식, 문학 매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5339)

**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 조교수

목차

1. 서론 - 검열의 균열
2. 검열의 균열과 검열인식의 문제
3. 카프 탄압기(1931~1935)의 검열과 검열인식
4. 카프 계열 문인들의 평론활동과 검열인식의 문제
5. 결론

1. 서론 - 검열의 균열

이 글은 1930년대 문인들의 검열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끼쳤던 카프 해산 이후 발견되는 문건들을 통해 당대 문인들이 실제로 검열을 어떻게 인식·과약하고 있었는지를 살피는 데 목표를 둔다.

이는 ‘당대 검열이 어떻게 작동하였는가’, 혹은 ‘(문인과 출판 주체들이) 검열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피는 작업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 그보다는, ‘당대 문인들은 검열이 어떻게 작동한다고 인식했는가’, ‘당대 문인들은 검열 기준을 어떻게 상정하였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가깝다. 당대의 검열 실재가 아니라, 검열 인식을 살피는 연구의 일환이다. 이는 ‘검열은 균열되어 있고, 검열의 주체나 문인들은 그 검열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명제를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예컨대 “1930년대에 일제는 사회주의와 독립사상을 담은 문건들을 검열을 통해 탄압하였다.”는 명제는 언뜻 확실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들린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명제는 자명하다고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명제가 당대에 어떻게 작동하였는지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가? 기존의 연구나 논의들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인식과 실재 양면에 있어서 어떤 양상으로 검열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논의

했는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적 레아리즘’이라는 기호를 발화하는 것, 또는 이것을 조선에서 구현하는 일에 대한 고민을 천명하는 행위는 카프가 해산했던, 즉 전시 동원 체제 이전에 일제의 검열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났던 1935년 전후라는 시기에 검열 · 삭제를 면할 수 있었는가? 검열이 실제로 작동되고 실천되는 양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달라서, 임화는 카프가 해산한 직후인 1936년에 주요 일간지인 <동아일보> 지면에서 ‘낭만주의는 사회주의적 레아리즘이라고 불리는 문학의 불멸의 내용’¹⁾이라고 선언하고, 또 그 근거로 레닌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기도 한다. ‘1930년대 일제는 사회주의를 검열을 통해 탄압하였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한들, 이것이 ‘사회주의의 어떤 면이 탄압되었고 어떤 면은 용인되었나’하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사례는 이처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이 식민지에 설치한 총독부를 포함한 국가기관(그중에서도 1930년대 조선총독부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검열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의 검열이 균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이 균열은, 당대의 검열인식²⁾을 복잡하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검열은 개작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³⁾. 하지만 ‘검열 회피를 위해 개작을 수행한다’는 단순한 과정만을 상정하면 양자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의 한

1) 임화, 「위대한 낭만적 정신 (하(下))」, 동아일보, 1936. 1. 4.

2) ‘검열인식’은 실제로서의 검열과 비교하기 위한 인식론적 개념의 성격을 지닌다. 검열의 실제 기준, 정책이 아니라, ‘검열의 기준이 이리할 것이다/이러했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의미한다. 실제 기준과 정책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당대 문인들의 이러한 인식에 의해서도 검열은 작동할 수 있다. 예컨대, A라는 기호가 실제로 검열 당국에 의해 검열 대상이 되는 리스트로 오르지 않지만, ‘당연히 A는 검열 대상일 것이다’라는 인식이 존재하여 실제로 A라는 기호가 발화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검열인식’은 일차적으로 이런 상황에 접근할 때 유용성을 획득한다.

3) ‘개작’은 수정이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이 문제에는 탈고와 발표(출판) 사이에 이루어진 수정을 개작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가 결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개작은 주로 후자의 의미로 사용된다.

계는 명확하다. 검열을 회피하기 위해 무언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검열의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입각하여 검열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어야 개작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검열, 그중에서도 당대의 검열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체라는 점에 가로놓여 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검열의 기준은 불명확하게 제시된다.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그것이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상술하며 이 글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다.

일제의 사상 탄압이 실천되는 제도 중 가장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검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것처럼 강력하게 작동한 것이었다면 이 검열에 균열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검열은 대중이 언뜻 생각할 수 있는 바와는 반대로, 그 기준이 명확할 때보다는 불명확할 때 오히려 그 효과가 강화된다.⁴⁾ ‘이것은 검열되고 저것은 검열되지 않는다’는 기준 제시가 명확할수록, 그 검열을 회피할 수 있는 난이도는 역설적으로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검열의 기준은 대부분 명확하게 공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검열 주체의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면서 기본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검열을 맡은 실무자도 그 덕분에 우왕좌왕하게 되지만, 그것은 검열의 기준이 모호하게 남아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검열 강화 효과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로 보이기도 한다. 오히려 그 우왕좌왕은 역설적으로 창작/출판 주체의 검열 회피를 더욱 어려운 것으로 만들게 된다.

따라서 검열 주체는 역으로 검열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어 그 효과를 강화하는 ‘묘’를 터득하기도 한다.⁵⁾ 하지만 검열 기준이 애매하게 되는 것

4) 이에 대해서는 심희기, 「한국법의 상위 개념으로서의 안보이데올로기와 그 물질적 기초」, 『창작과 비평』, 1988. 3. 이 박정희 정권의 반공주의가 이와 같은 성격을 심분 활용한 것을 예로 든 이후 많은 후속 논의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은 이처럼 전략적인 맥락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1930년대 일본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 기준을 균일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이기도 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처럼 검열원칙은 총론적인 것일 뿐, 그 총론만으로는 모든 텍스트의 운명을 순간순간 측정할 수는 없었다. 검열관 개인의 감각, 검열당국의 정책의도 및 그 의도의 시간적 변화, 특수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강조점의 이동,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텍스트 주체의 노력 등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양상은 ‘입체적인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고유 의 매개공간을 창출했다.”⁶⁾로 당대 검열원칙이 총론적 수준에 머물렀음, 그리고 ‘예거주의’⁷⁾나 검열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검열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었음⁸⁾을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모든 검열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가져야 하는 일반적인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 구체적인 원인과 효과를 오히려 전제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처럼 검열의 기준이란 불명확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맥락에서 ‘자기검열’은 다른 논의에서보다 더 큰 중요성을 획득한다. 자기검열은 검열의 기준을 스스로 상정하여 그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 주체에 의한 검열 자체가 분열되어 있을 때, 자기검열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기검열과 구별되는, 국가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검열을 ‘공적검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기준의 객관

5) 앞의 각주에서 언급한 심회기의 논문이 근거로 사용한 박정희 집권 직후에 이루어졌던 검열/검거는 이러한 법칙을 상당히 충실하게 따른 사례이다.

6) 박헌호, 「식민지 검열장의 성격과 근대 텍스트」, 『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 소명출판, 2011, 294면.

7) 정근식의 논의에서 사용된 용어로, 검열이 이루어졌던 상황을 예거로 하여 검열 기준과 정책을 판단/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정근식, 「식민지검열과 ‘검열표준」, 『대동문화연구』 79집, 2012, 7-43면.).

8) 문한별, 조영렬, 「일제강점기 문학 검열의 자의성과 적용 양상」, 『Journal of Korean Culture』 48, 2020, 2, 129-156면.

성/주관성의 문제에서 접근할 때 자기검열과 공적검열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까지 발생한다. 자기검열은 주관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적검열 또한 상기한 이유로 주관성의 영역을 상당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맥락에서 기존 한국 문학 연구 장에서 이루어졌던 일제 강점기 후반의 검열 연구 성과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대략 2000년대 중반, 소위 '사회문화사'적 연구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문학 연구에 적용되면서, 검열에 대해서도 괄목할만한 논의들이 제출된 바 있다. 그중에 본 연구와 연관성이 높은 몇 가지 성과들을 언급하기로 한다.

박헌호의 연구⁹⁾는 당대의 '기관'과 '신문'이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검열 주체와 검열 대상'의 관계가 아니라, '검열 주체의 역할을 공유하던' 관계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논하였다. 한만수¹⁰⁾는 2006년~2007년에 걸쳐 일제 강점기 검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성과를 제출한다.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두 연구자의 일련의 작업을 통해 당대 검열이 명확한 기준과 체계를 갖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그 검열 주체의 존재 양식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실증적 정리는 대체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검열의 주체가 확실한 자기 일관성과 완전성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 검열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정권 vs 출판사와 작가가 아니라 정권/신문 vs 작가의 관계 등 복잡하게 존재했다는 사실들이 2000년대 중반의 연구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괄목할 성과들이 멈춘 지점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그

9) 박헌호, 「문화정치기 신문의 위상과 반-검열의 내적 논리」, 『대동문화연구』 50, 2005. 6, 199-259면.
10) 한만수, 「1930년대 검열기준의 구성원리와 작동기제」, 『동아어문학』 47, 2006. 8, 279-309면.
/ 한만수, 「1930년대 문인들의 검열 우회 유형」, 『한국문화』 39, 2007, 227-254면. / 한만수, 「식민지시기 검열의 드러냄과 숨김」, 『배달말』 41, 2007, 203-231면.

지점이 바로 본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검열주체의 균열 뿐아니라, 검열대상¹¹⁾, 혹은 검열을 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작가나 (박헌호의 검열 주체로서의 역할을 나누었던 신문을 포함한 - 신문은 검열 주체와 대상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출판 주체들의 균열을 같이 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¹²⁾ 그리고 이 문제의식은 균열을 마주한 검열 대상(작가/출판 주체)들의 대응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한다는 지점까지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의 키워드 중 하나인 ‘검열인식’이 제출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검열 주체의 균열 때문에, 따라서 불완전한 균열 때문에 필연적으로 검열에 대처해야 하는 작가와 출판 주체들의 균열도 생각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가령, 검열 주체가 아닌 검열 대상의 일련의 행위(자기검열, 개작 등)가 무조건 검열을 피해야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가능할까? 2000년대 중반의 연구들을 보면, 검열 주체는 그 존재와 실천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검열대상들은 매우 흔들림 없는, 일관된 목표와 그것을 위한 전략을 수행하는 주체들처럼 그려지곤 했다. 하지만 검열대상들의 검열인식이 저마다 달랐음은 물론이고, 이 복잡한 인식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을 야기했음도 자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성과들이 논의한 ‘검열 주체의 균열’을 발판으로 삼아 그로 인한 검열대상들의 인식을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11) ‘검열대상’은 관점에 따라 작품/텍스트를 일컬을 수도 있지만, 기존 연구에 따라서는 검열대상을 작가/출판 주체를 일컬을 때도 이 기호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검열과 관련한 작가/출판 주체를 ‘검열대상’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12) 사실 이 문제의식은 실제보다 인식을 중요하게 보는 인식론적 관점의 일환이기도 하다. 검열을 예로 들면, 당대 검열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는 없다. 검열 주체도 명확하게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던 ‘당대 검열’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원칙이나 원리보다는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는가’의 문제가 사실상 검열을 작동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방법론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1931년에서 1935년까지이다. 물론 이 시기는 카프에 대한 가시적인 탄압과 카프의 해산계 제출이 걸쳐 있는 시기이다. 물론 이러한 물리적인 조건도 있지만, 일제의 검열기조가 ‘전시 동원체제’로 바뀌기까지의 한 기간을 이룬다고 본 것도 시기 설정의 이유이다. 당시에 정기간행물을 통해 발표된 문건 중 검열인식을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을 살피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당대 문인들이 공유했던 ‘검열인식’을 재구해 보는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다. 이 논문의 가설은, ‘카프 해산을 통해 당대 검열인식이 변화하였다/강화되었다’와는 약간 결이 다르다는 것을 밝힌다. 대신 ‘검열인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검열의 작동에 실제로 기여한다. 검열인식은 상징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형성되는데, ‘카프 해산’은 상징적 사건과 검열인식의 작동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1930년대와 카프가 연구 대상이 된 것은 검열인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는 이유도 존재한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검열 연구에서 ‘인식’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을 역설하고자 하는 데에도 닿아 있는 사실과 연관된다.¹³⁾

2. 검열의 균열과 검열인식의 문제 - 覆字와 검열인식

주지하는 것처럼, 검열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방식에는 삭제, 원고 몰수,

13) 따라서 1930년대의 검열인식의 역할이 1920년대의 그것보다 더 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업은 이 논문에서는 수행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존 연구의 결과에서 그 가능성을 짐작할 수는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인쇄된 지면에 삭제된 흔적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검열당국이 193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주요 ‘잡지’들에 검열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을 지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이민주, 「검열의 ‘흔적지우기’를 통해 살펴본 1930년대 식민지 신문검열의 작동양상」, 『한국언론학보』 61(2), 2017. 4., 37면.)

필자/출판사의 사법처리 등 있다. 이중에서 삭제처리가 대체로 가장 온건한 검열이고, 또 이중에서 복자(覆字)는 글자 단위로 삭제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이나 문단을 삭제하는 것에 비해) 그중에서도 온건하다. 온건한 검열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에 따라 복자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좀 더 과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글자가 구체적으로 복자대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추론하기 쉽지 않다.¹⁴⁾

가령, 일제의 검열 제도에서 ‘독립’이라는 기호는 복자 처리 대상이었던 시기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가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소위 ‘독립사상’과 민족주의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또한 한반도에서 두만강을 넘어가면 바로 펼쳐지는 만주에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일본은 다시 ‘오족협화’라는 기호를 동원하여 각 민족의 자립과 자치를 강조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정은 꽤 복잡해진다. 한반도와 만주를 통치하는 제도와 전략은 달랐으나, 또 양자는 매우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만주 통치의 슬로건 ‘오족협화’와 조선 통치의 슬로건 ‘내선일체’의 간극과 길항 사이에는 ‘독립’이라는 기호에 대한 승인/묵인이라는 구체적인 현상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복자의 존재는 물론 일차적으로 검열의 가장 분명한 표지이다. 하지만 다음의 용례들을 보면, 복자의 역할에도 ‘균열’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 삭제된 것은 여백으로 남기지도 못하고 ‘삭자’의 기입도 못하게 하며 복자도 사용치 못하게 하여 전후 문구가 부합치 않게 만드니 이것을 개정할 것¹⁵⁾

14) 복자처리 대상 어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처리된 글자를 실증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도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5) 「잡지업계가 奮起(분기), 검열 개선을 요구」, <동아일보> 1931. 3. 12.

2) 逢戰死者 不知其數 斬X將 七級餘X...(중략)...(복자는 기자)와 같이 쓰시었다.¹⁶⁾

3)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말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그림은 다른 문자적 원고와 달라서 미리 검열을 안 받는 관계상 차라리 발표가 더 부자유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신문지법에 의한 잡지가 미리부터 주저해서 복자를 안 써도 조흔곳에 왕왕히 쓰이고 마는 폐단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림 역시 여간해서 검열에 통과되엿직한 것이라도 미리부터 주저해서 본 뜻을 이루는 일이 많다.¹⁷⁾ (밑줄 - 인용자)

위의 세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오히려 필자나 출판 주체 등의 검열대상이 검열에 우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복자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을 보면, 오히려 검열대상들이 검열주체에 게 ‘복자를 허할 것’을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삭제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완전 삭제보다는 오히려 복자가 온건한 검열 방법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다음 2)와 3)의 ‘복자 인식’ 사례를 보면 1) 도 나름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는 인용문 본문에 밝혀 있는 것처럼 필자인 기자가 스스로 ‘복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이충무공 고토 참배기」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 글은, 충무공의 무공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X將과 같이 복자 처리한 표현이 여러 발견된다. 여기서 기자가 스스로 복자 처리한 글자는 ‘倭’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검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표현을 ‘왜장’ 대신 ‘적장’으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방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필자는 오히려 검열 도구인 복자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한글 독자들

16) 「이충무공 고토 참배기」, 〈조선일보〉 1931. 5. 22.

17) 이주홍, 「아동문학 수년간(8)」, 〈조선일보〉, 1931. 2. 20.

이 유추할 수 있는 ‘왜’라는 표현을 복자 처리를 통해 역설적으로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소기의 효과를 누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는 꽤 이례적인 경우이지만, 3)을 통해 이와 같은 ‘스스로에 의한 복자 처리’가 꽤 일반적인 현상으로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스스로에 의한 복자 처리’는 ‘자기검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기검열이 문자 텍스트에서는 복자 처리에 의해 다소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복자 처리가 없는 그림 텍스트에서는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복자라는 검열방식이 검열주체와 검열대상의 상호관계 하에서는 상당히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복자를 둘러싸고 검열이 다양하게 작동하는 양상을 살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검열’이라는 기호가 대두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 자기검열은 결국 더 나아가 검열대상의 ‘검열인식’을 그 전제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A라는 기호는 검열될 것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존재했던 검열의 기준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었기 때문에, 검열관에 따라 이 A라는 기호는 검열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반례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해당 기호의 검열이 창작과 유통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오히려 당시 문인들이 자기검열을 통해 A라는 기호를 자진해서 삭제하거나 다른 기호로 대체했다면, A라는 기호에 대한 ‘검열인식’은 실제 검열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존재했던 셈이 되고, 오히려 더 강력한 검열로 작용했다고 서술할 수 있다. 위에 인용한 사례들은, 사실상 검열주체에 의한 검열의 양상보다는, 검열대상의 ‘검열인식’과 그 결과로서의 행동 양식을 드러내 주는 것들이다.

결국 ‘A는 검열되는 기호였다’는 전제로 하여, ‘따라서 작가는 A라는 기호를 쓰지 않음을 통해 검열을 회피했다’는 논증을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A라는 기호의 회피’라는 결과를 전제

로 하여 'A는 실제 검열 기준이 있든 없든 검열 대상으로 인식되는 기호였다'는 순서로 논증을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작업일 수 있다.

3. 카프 탄압기(1931~1935)의 검열과 검열인식

1925년 8월 결성한 카프에 대한 탄압은 193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1935년 6월 김기진이 「카프 해산계」에 서명·날인하면서 강제해산으로 귀결되었다. 이 10년간 일제의 문화정책과 기조는 역동적으로 바뀌었으며, 사실상 이에 따라 검열 기준이 최소한도로 정비되고 공포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기준 확립보다 실천이 앞서는 상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오히려 검열 당국에는 득으로 작용했고, 반대로 해산된 카프의 문인들, 그리고 그 검열과 해산 과정을 거쳐가면서 '구체적 검열 경험들의 일반화'라는 불확정한 추론을 통해 검열 기준을 가늠해야 하는 당대 문인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조건을 제공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37년 중일전쟁을 거쳐서 일제 정부에 의한 문화정책은 이전 시대와는 달라진다. 전시동원체제가 확립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문인들은 카프와 인연이 있었든 없었든, 카프 문인들이 겪은 일을 일종의 본으로 삼아 자신들의 문학 활동에 자기검열을 가미해야 하는 필요가 생긴다. 요컨대, 카프 사태는 카프와 관련 없는 문인들의 검열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사실 1935년 카프 해산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1930년대의 시작과 함께 정착되었던 일본의 검열 정책과 문인들의 검열인식을 극적으로 바꾼 계기는 아니었다. 기존 논의를 참고하면, "1935년에서 1937년까지의 문학장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평론들이 발표되었다."¹⁸⁾ 따라서 카프 해산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가 파시즘

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7월에 실시한 카프 1차 검거를 전후해서 형성된 검열기의 정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31년 만주사변/1932년 오죽협화/만주국 수립/1932~1934년 일본/소련 151회 무력충돌(국경)/1937년 내선일체 주창/1939년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1940년 일본/소련 협상

카프 검거와 해체를 둘러싼 일제의 검열 기조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대외적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위와 같다. 일본이 만주에 대한 침략 야욕을 드러내면서 길으로는 중화민국 정부와의 충돌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련과의 국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32년부터 34년 사이의 3년간 151회에 걸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1939년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조약을 맺고¹⁹⁾ 이듬해 1940년 일본과 소련의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만주사변으로 촉발된 소/일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와같이 당대 조선의 검열기조는 대중 관계뿐 아니라, 소련, 독일 및 기타 열강과의 다면적인 외교 관계를 복잡하게 반영하고 있다.

카프의 1차 검거는 31년으로 만주사변, 2차 검거는 34년으로 소련과의 무력충돌과 그 시기가 겹친다. 제국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탄압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으나, 소위 ‘문화통치’로 일컬어졌던 1920년대와 ‘만주침략기’로 일컬을 수 있는 1930년대에 일본이 사회주의 문건을 다루는 태도는 구체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1920년대 중반부터 복자처리와 몰수 등 검열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에 의하면 사회주의 계열 잡지가 폐간되는 시기가 주로 이 카프 1차 검거~해산 시기와

18) 채호석, 「검열과 문학장 : 1930년대 후반 한국문학에서의 검열과 문학장의 관계양상」, 『외국문학연구』 27, 2007. 8, 316면.

19) 독일과 동맹 관계였던 일본은 이 일로 이후 소련과의 협상 진행으로 노선을 변경한다.

맞물려 있음이 드러난다.²⁰⁾ 20년대와 30년대의 검열 강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으나, 잡지들이 폐간된 시기를 자료로 보면 하나의 유의미한 경향성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년대보다는 30년대 초반에 검열 주체가 ‘사회주의’와 그 관련 문건이나 기호에 더욱 적대적으로 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관련 검열이 강화된 것은 당시 일/소의 관계가 악화된 것과도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주의 관련 검열이 더욱 강화되는 이유는 소련과의 갈등뿐 아니라, 만주국을 수립하고 그 통치 이념으로 동원하는 ‘오족협화’에서도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립’이라는 기호는 1930년대에 복자 처리 대상이 아니었는데, ‘민족주의’나 ‘독립정신’과 관련된 기호들은 만주국 수립 이후 복잡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오족협화’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조선과는 다른 사정을 지닌 만주국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각 민족의 독립성과 자치성을 보장해주는 외연을 가지고 추장되었던 슬로건이었기 때문이다. 만주국은 한인, 만주인, 몽골인, 조선인, 일본인이라는 최소 5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었던 다민족 국가였다는 점과 관련 있음은 물론이다.²¹⁾

문제는 만주와 조선의 당대 심상지리적 거리는 분단 이후에 형성된 인식 속의 상호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는 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족협화는 조선인들의 만주행을 결심하도록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동하였고²²⁾²³⁾, 따라서 이는 문인과 대중들의 일제 통치 기조에

20) <노동운동>(27.5-31.10), <조선지광>(22.11-32.2) 등이 그 중 대표적인 사례다. 발간주체들이 당시 폐간의 이유로 재정, 검열, 원고난을 호소한 만큼, 당대 잡지들의 폐간에 검열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문중,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과 지국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0-4, 2007, 7-44면, 참고.

21) <만선일보>의 간행사에도 이러한 이념은 명확하게 드러나며, 염상섭과 안수길의 만주행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22) “오족협화의 기치하에서 조선민족도 당당한 민족단위를 들건마는 그래도 실체는 탐탐치 못하여 가옥생활, 우거신세 곤궁하니 이곳이 하도 떠나지 말라고 만류할 아무 밑천이 없는지

대한 감각, 나아가서 검열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이 도출된다.

그러하거늘 현하 조선의 출판법규는 실로 엄청나게 시대에 뒤떨러져 잇서 문명한 정치하에 존재한다기에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신문지의 발행은 당국의 허가가 잇서야되고 단행본의 출판은 원고의 검열을 받아야 된다. 월단의 잡지 같은 자는 그 존재까지도 법규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단행본의 계속’이란 형식으로 이름을 허하고 있다.²⁴⁾

1920년대에도 검열은 존재해 왔지만, 신문 등 조선 언론의 검열에 대한 문제제기는 좀 더 가시화되어, 인용문과 같은 글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고, 특히 연극/영화계에서는 이 문제가 좀 더 강조되었는지, ‘각본 검열 통계’²⁵⁾, ‘영화검열’²⁶⁾ 등의 통계자료가 지속적으로 신문지면을 메웠다. 특히 1932년 신춘문에 선후평에서는 급기야 다음과 같은 선후평이 제출되었다.

응모작품의 구할이 계급투쟁을 테마로 한 것이었다. 그 스토리에 잇서서 모도가 너무도 혹사하고 붓에 탄력이 없어서 결과는 조치 못한 데다가 검열에는 무슨 패스를 못하겠기에 제외해버리기는 하였지만 응모작품의 구할이 계급투쟁을 테마로 한 것이라하는 것은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다.²⁷⁾ (밑줄 - 인용자)

라, 가게 되면 갈 수밖에는 도리가 없으려니와”(『횡설수설』, 동아일보, 1935. 4. 13)

23) 사실 염상섭과 안수길의 만주행을 이와 같은 내러티브로 해석한 사례들이 많은 것을 보면, 당대 문인들에게 오족협화가 매력적인 만주행의 동기였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24) 「조선의 출판자유- 시대착오적 법규를 개정하라」, 동아일보, 1931. 3. 13.

25) 「각본 검열 통계」, 동아일보, 1932. 3. 14.

26) 「7월 중 영화 검열」, 동아일보, 1933. 8. 27.

27) 「신춘문에 소설 선후언」, 동아일보, 1932. 1. 15.

이 인용문은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검열인식’이 유효한 개념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사실 엄밀히 구분해 보자면 ‘기관검열’에도 해당하지 않고, ‘자기검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검열 주체가 아닌 문인이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작품이 아닌 다른 사람(투고자)의 원고를 검열한 사례이니, 이는 ‘검열’이 아니라 ‘검열인식’이라는 기호가 아니면 설명하기가 힘든 사례인 것이다.²⁸⁾

이와 같은 검열인식이 작용하는 사례는 신춘문에 등 심사위원이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민열차」는 검열관계에까지 펴 머리를 쓴 것으로 보아 만히 발표해 본 사람의 작품인가 싶으나 너무 소극적이었고 표현에 있어서도 대담한 데가 없다. 이것은 검열에 너무 사로잡힌 까닭이었던가 싶다.²⁹⁾”는 앞의 인용문과는 같으면서도 세부적으로 구별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심사자가 작가의 ‘자기검열’이 과도함을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자기검열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검열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자기검열의 기준이 과도함을 지적하는 경우 등, 1930년대 초중반 문인들의 검열인식이 실재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검열인식이 검열당한 경험뿐 아니라, 검열에 대한 조직적 항의와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검열을 당한 직/간접 경험이나, 검열에 항거한 직/간접적 경험이나 동일한 작용을 하는 면이 있다. 일체의 검열이 극

28) 이는 물론 앞서 소개했던 박현호의 (신문이 검열 주체로서의 역할을 나눠 가졌다는 논의를) 뒷받침해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 ‘검열주체’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던 신문 필진들이 문인들 중 한 명이었으며, 그들은 또 나름의 주관적인 ‘검열인식’을 갖고 주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29) 「신춘문에선후감」, 동아일보 1935. 1. 10.

적으로 도입된 1920년대 중반과 1930년대 중반의 경우 이 ‘검열’이라는 기호 자체가 보도의 대상으로 적극 호명되는데, 이것이 검열 사실을 알리는 것이든, 그 사실을 비판하는 것이든 대중의 검열인식을 강화하는 데는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이다.

1931년에서 1935년으로 향해 가면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검열에 대한 보도의 성격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성격을 띤다. 다음의 예문은 앞에서 소개한 예문과는 다른 각도에서 서술되고 있는 문건이다.

한동안은 사회주의적 사상을 배경으로 한 이데오로기 영화가 유행하는 한편 불건전한 유희적 연애를 취급한 불순한 영화가 혹은 한갓 남녀의 열정을 도발함과 같은 비외한 화면을 주로 한 소위 에로틱 영화가 유행하여 이것이 조선대중의 사조와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작년에는 소위 ‘비상시’를 반영하는 영화가 만했다.³⁰⁾

인용문의 제목은 「최근 영화 검열 상황」으로, 제목만 보면 앞서 언급된 당대 영화 검열 관련 기사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통계나 사례)을 담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게 된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뭇 다른데, 인용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검열에 대한 태도가 판이한 차이를 드러낸다. 사회주의 사상 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불건전한 유희적 연애’를 다룬 영화와 함께 묶어서 서술함으로써, 검열이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었던 장치인 것처럼 선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1930년대 신문지상에서 찾을 수 있는 문건들은 당대 사회주의 관련 검열이 강화되었음을 드러내는 논거이면서, 동시에 이에 따라 문인과 대중의 검열인식이 사회주의 관련 검열에 집중되었음을 드러내는 근거이기도 하다. ‘검열수난자(이는 검열 피해자라는 인식론적 대상을 새롭

30) 「최근 영화 검열 상황」, 동아일보, 1935. 1. 11.

게 환기시킨다)라는 기호³¹⁾는 이때 등장하였으며, 이 기호 역시 당대 문인들의 검열인식이 이전 시대에 비해 매우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카프가 당한 검열이 그러한 효과를 문인 및 대중에게 발휘하였다고 보는 것도 따라서 무리가 아니다.³²⁾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관지를 어떠한 획득하며 외계의 구속인 검열을 어떻게 극복하며 대중에게 섭취될 만한 예술의 어떠한 형태를 통해야 우리의 시가를 제작함으로써 당면적 미조직 대중을 조직케 하며 미의식 대중의 의식을 환기시키는데 일익적 임무를 다할 것인가.”³³⁾는 식의 인식이 카프 문인 당사자들에게 공유된 것과는 별개로, 카프의 검거와 해산은 검열인식을 심어주는 하나의 중요한 본보기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결성될 문예단체는 첫째 검열수준과 문예, 둘째 쩌 날리즘의 집필가독점과 문단분열 등 문예가로서 당연히 항쟁해야 할 제 문제가 부과되어 있는 이만치 그 결성의 필요, 또는 가능성이 업지안함을 모르는 까닭이라고 우리는 본다.”³⁴⁾는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검열 체제와의 투쟁은 1935년 이후 문단 사업의 중요한 과제로 부과되었으며, 1937년 전시 동원체제가 정착되면서 이 판이 깨지기 전까지 검열인식을 강화하는 담론과 또 그에 대항하는 담론 간의 투쟁이 각축된 역동적이고 모순적인 시기가 형성된다.

31) 자기는 정히 쇼(버나드 쇼) 이상의 검열수난자다. 이번의 「빅토리아레지나」로 말하더라도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이야기로 삼십개의 연쇄춘극으로 맨들어가지고 내대신 크로나 경에게 문의하였던바 여왕의 따님 세 분이 아직도 존명중인즉 좀 더 연화시킬 방법은 없느냐 하므로 부득이 개작한 것이다, 하면서 기쁨을 토했다. (「쇼 이상의 검열수난자」, 동아일보, 1936. 5. 7.)

32) “그러나 만일 작가 여러분만을 책하는 것은 너무 과한 일이겠다. 검열 그 타(他)의 객관적으로 보아 극도로 불리한 정세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근자에 인테리 전군을 업습한 위기라든가 작자의 생활상근공이라든가 노동자농민과의 접촉의 길이 아주 끊어진 것이라든가 그 외에도(후략) 황육, 「국외자로서 최근 캅프에 대하여 1」, 1934. 4. 20.

33) 박완식, 「푸로레타리아 시가의 대중문화제 소고 3」, 동아일보, 1930. 1. 9.

34) 「문예가 단체 결성의 필요」, 동아일보, 1935. 8. 11.

지금까지 이 장에서 논의된 바를 정리하면, 만주사변 이후 사회주의 관련 검열이 조선 내 검열의 주를 이루었으며, 이 검열은 비객관성, 비균질성을 가진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 검열 비판/보도 문건들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언론의 지면을 매우면서, 문인과 대중들의 ‘검열인식’이 강화되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검열인식이 작동하는 지점은, 기관검열과 자기검열이라는 기호로는 구분할 수 없는 중간 영역에도 존재한다.

4. 카프 문인들의 비평활동과 검열인식의 문제

이 장에서는 카프 문인들의 비평활동에서 검열인식이 작용하는 양상을 다룬다. 그리고 그 사례로서 비평의 문건의 내용들과 비평문의 개작을 주된 텍스트로 삼아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논의에서는 당대 비평이 검열을 내면화하는 양상이 있다는 사실을 서술하였다.

둘째, 비평에서 검열은 내면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부분적으로는 강박적으로 지배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략) 여덟째, 소설적 현실로 구성되는 세계는 이전 세계에 비해 현저하게 좁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한편으로 전망의 상실과 연관되고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검열의 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³⁵⁾

인용된 논문은 임화를 비롯한 여러 카프 계열 비평가들의 자기검열 양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르크스나 엥겔스를 ‘위대한 선배’나 ‘위대한 철학자’³⁶⁾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

35) 채호석, 앞의 글, 331면.

실도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이 당시 자기 검열에 대한 좀 더 맥락화된 고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부분이 있다.

이 논문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임화를 둘러싼 ‘기교주의’ 논쟁이다.

임씨(임화)는 “우리 시단일방의 가장 왕성한 주류로서 수십년래 번영하고 있는 소위 ‘기교파의 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 새삼스러웁게 까다롭게 기교주의라고 불려지는 시단의 유명”이라고 하여 기교주의라는 명사를 이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 개의 자명한 개념으로 취급하고 잊지마는³⁷⁾ 그러나 씨는 ‘기교주의’라는 명사를 김기림 씨와 같이 엄밀한 규정 아래 사용하지 안코 그가 소위 ‘뽀루주아 시의 현대적 후예’라고 생각하는 모든 시인을 이 명사로 개괄하러 드는 것이다.³⁸⁾

인용문은 박용철의 글로, 임화의 기교주의가 김기림의 그것처럼 ‘엄밀성’을 갖고 있지 못한 채 서술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비평의 요지를 비판한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검열인식’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지점이 존재한다.

임화가 ‘기교주의’에 대해 느슨한 접근을 보이는 것은 양주동, 김기림이 1928년경부터 천착해 왔던 이 개념과 그 관련 논의들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은 일견 단순한 관점이라는 점에서 이 논의는 출발한다. 사실 마르크르스를 ‘위대한 선배’라고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임화가 1936년에 레닌의 실명을 직접거론하여 검열을 통과한 사례로 볼 때, 굳이 필요 없는(마르크스라고 지칭해도 검열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점에

36) 같은 글, 315면.

37) 박용철, 「시단시평 1 - 기교주의설의 허망」, 동아일보, 1936. 3. 18.

38) 박용철, 「시단시평 2 - 기교주의설의 허망」, 동아일보, 1936. 3. 19.

서) 우회 행동을 수행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³⁹⁾, 앞장에서 서술했던 ‘검열인식’으로 접근하면 그렇지 않다.

임화는 1935년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주의 레아리즘’의 현현 문제에 대해 천착하고 있으며, ‘(소)브루주아 문학’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인용문 후반에서 보이듯이, 임화에게 ‘기교주의’란 매우 외연이 넓은 개념으로, ‘쁘루주아 시의 현대적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시를 지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논쟁을 촉발한 문서인 「담천하의 시담 1년」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지난해의 잠자리에서 눈을 부비고 창문을 열었을 때 올해의 시대적 하늘의 빛깔이란 매우 심상치 않다. 지난해 수십 명의 시인, 작가, 비평가의 일단 위에 내린 무서운 뇌우”⁴⁰⁾로 서술되는 글의 앞머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우회적인 서술’이 특징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임화가 이 글에서 쓴 ‘기교주의’의 대척 지점에 놓은 대상은 이 글의 앞머리에서는 ‘모든 종류의 양심 있는 문학’이라고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다. 김기림이나 임화가 이전에 보여줬던 개념 설정에 비해 ‘기교주의’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성기게 설정되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사실 그 대척 개념조차 저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느슨한 개념 설정’, ‘우회적인 표현’을 통한 검열회피라는 의도가 비평 문건 작성에 개입되었다고 보는 시각은 어떨까? 이런 해석의 온당성 자체를 주장하기보다는, 이러한 비평적 ‘검열인식’이 당대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서술할 필요는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카프 계열 문인들의 검열인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문건들을 인용의 형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씨는 로동 대중 잡지 〈전선〉을 발간코져 원고편즙을 마치어 당국

39) 사실 ‘말스’, ‘마르크스’라는 인명은 1930년대 신문지상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즉, 복자 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40) 임화, 「담천하의 시담 1년」, 〈신동아〉 1935. 12.

에 검열허가원을 제출하였든바 최근에 드디어 원고 전부를 압수당하는 동시에 불허가되었는데 잡지 <군기>는 ‘반갑꾸’사건 이후 발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⁴¹⁾

2) 그럼으로 우리는 창작의 ‘테마’와 기술 문제를 고려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아모리 훌륭한 주제의 소설이라도 지금의 검열 수준을 뚫고 나오지 못하면 그 능력이 적을 것이다. (중략) 나는 금년 4월 이후로 창작과 평론 등 십여 편을 쓴 일이 잇스나 그것은 대개가 죽고 말았다. (중략) 최대한도까지 이용해야 될 것을 깨다려다 이에는 무엇보다도 기술 문제이다. 그렇다고 검열 ‘패스(패스 - 인용자)’의 기술 문제에만 치중하면 그것도 잘못이다. 이기영의 「서화」도 여기에 치중하노란고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다.⁴²⁾

3) 검열 통과를 위하여 역과 소개에 본의와 본문을 다소 변경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 때⁴³⁾

4) 이들 동반자 작가 수씨의 일군은 저널릿즘과 검열의 관문을 교묘히 통과하도록 노력하면서 그들의 활동은 그나마 계속될 것이다.⁴⁴⁾

인용문 1)은 당시 ‘카프 사건’ 이후 검열이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인식이 문인과 대중들에게 폭넓게 공유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이는 결국 ‘검열이 강화되었다는 인식’의 강화로 작용하고, 이는 1930년대 문인들이 당대를 2)와 3)의 사례처럼 ‘이전 시대에 비해) 적극적으로 검열 우회를 수행해야 하는 때’라고 인식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복수의 문건에서 당대 문인들이 검열과 관련된 1930년대 초중반을 다음과 같은 시기로 인식했음이 확인된다. “카프 해산과 함께 검열은 강화되었고, 그 검열의 칼끝은 사회주의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으며,

41) 동아일보, 1931. 7. 1.

42) 박승극, 「창작의 기술 문제 - 이기영의 「서화」를 계로」(3), 조선일보, 1933. 9.6.

43) 정인섭, 「32년 문단 전망(19)」, 동아일보, 1932.1.21.

44) 함대훈, 「현하정세와 조선문학의 위기(3)」, 1935. 6. 19.

이를 교묘히 우회해야만 작품 활동 지속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여러 문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논의의 끝이 될까? 그렇지 않다. 이 인식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그것 자체로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한다. 김남천의 다음 문제제기는 그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곳에서 그(박승극 - 인용자)는 나어린 김남천의 〈서화〉 평에 망외의 야량을 보이시면서 그 실 예술적 방법의 문제를 검열제도에 대한 기술상 문제로 환원하고 말았다. 이것은 진실로 놀래일만한 곡예이었다⁴⁵⁾

인용된 김남천의 글은, 사실 바로 앞서 소개된 인용문 3)의 필자 박승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박승극은 위의 인용문 3)에서 이기영의 「서화」를 논하는 맥락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김남천의 「물」에 대한 비평 및 논쟁을 수행할 때도 ‘검열 패스’라는 변수가 작용했음을 지속적으로 거론하였다. 김남천이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은 바로 그 점이었으며, 김남천은 ‘검열 패스’를 거론하며 ‘예술적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우회하는 박승극을 비열하다고 ‘용기를 왜 갖지 못하는가’ 운운하며 비난한 것이다.

소설이나 비평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이는 필자의 오산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는 필자의 의도가 아니라 검열 우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소설이나 시를 대상으로 하는 비평 활동이든, 비평을 대상으로 하는 메타 비평 활동이든, 검열 우회가 창작 방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검열인식’이 존재했던 당대의 비평 장은 복잡한 양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카프의 해산을 전후하여, 문인들과 매체 간행 주체들이 검열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고, 그 기준을 주관적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문건들

45) 김남천, 「문학적 치기를 웃노라(2)」, 조선일보, 1933. 10. 11.

을 거론하였다. 검열인식이 발화를 통해 드러나는 사례들인데, 1930년 이후 쉽게 찾아지는 이러한 예들은 검열인식을 통해 문인들의 자기검열이 작동된 양상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비평활동에서도 이 인식이 전제로 작용했던 정황을 보여주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는 당대의 비평 활동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던 사례들을 남기고 있으며, 이러한 검열인식을 전제로 하여 당대 비평들을 좀 더 폭넓게 재독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5. 결론

이 글은 카프 검거 및 해산이라는 상징성을 지니는 사건과 검열인식의 관계를 논하였다. 검열인식은 어느 시기에나 존재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사회 성원들의 머릿속에 불규칙하게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카프 해산이라는 상징적 사건과 당대 식민주체 일본의 복잡성과 팽창성 때문에, 검열실재와 검열인식은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그 간극을 드러낸다. 이 글이 이 시기의 검열인식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1930년대 검열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동시에 이 시기가 ‘검열인식’이라는 것이 실제 검열 작동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논의하는 데 적합한 때문이기도 하다.

검열과 검열 주체가 분열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연구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검열의 기준은 애초부터 명확한 기준에 의해 완전하게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공포되지도 않는다. 1930년대는 그러한 검열의 불완전성이 더욱 전면에 드러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문인들의 검열인식이 발화되는 사례들이 늘어난다. 실제 검열의 불명확성이 드러나는 시기에, 검열인식이 검열 작동 과정에서 맡는 역할은 늘어난다. 따라서 이 시기 ‘검열인식’과 ‘자기검열’은 창작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카프 해산은 카프 출신 문인들뿐 아니라, 당대 문인들에게 중요한 검열 인식의 형성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카프 해산은 이러한 점에서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이는 사회주의 문학을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 외의 문인들의 문필 활동에도 검열의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검열인식은 매체의 간행자, 문학상의 심사위원들도 불완전하지만 폭넓게 공유하는 분명한 실체를 가진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문학 장에 속한 사람들의 '자기검열'과 '개작'을 촉발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검열의 대상이 아닌데도 미리 문인들의 자기검열에 걸려 표현되지 못하는 표현들이 생겨난다. 또, 검열에 걸릴 것을 예상하여 편집자나 심사위원이 미리 검열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도 일어난다. 이는 일차적으로 검열 자체가 아니라 검열인식이 검열이 수행되도록 기여한 경우다. 그런데 이렇게 검열인식의 문제는 검열이 수행되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복잡성을 더한다. 검열인식은 자기검열을 발동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문건이나 표현을 보았을 때 '이러한 표현은 자기검열의 결과다'라는 가정을 하는 독법을 만들어낸다. 이는 검열인식이 자기검열의 차원을 넘어 비평활동의 변수가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검열이 불완전하게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검열의식이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성격을 지닌 변수로 복잡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검열인식은 검열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검열을 역이용하거나, 검열을 공격하고, 차원을 달리해 비평의 관점을 구성하는 등 다양하게 작동한다.

| 참고문헌 |

- 김문중,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과 지국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0-4, 2007, 7-44면.
- 문한별, 조영렬, 「일제강점기 문학 검열의 자의성과 적용 양상」, 『Journal of Korean Culture』 48, 2020. 2, 129-156면.
- 박현호, 「문화정치기 신문의 위상과 반-검열의 내적 논리」, 『대동문화연구』 50, 2005. 6, 199-259면.
- 이민주, 「검열의 '흔적지우기'를 통해 살펴본 1930년대 식민지 신문검열의 작동양상」, 『한국언론학보』 61-2, 2017. 4, 37-63면.
- 이상경, 「『조선출판경찰월보』에 나타난 문학작품 검열양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7, 2008. 4, 389-422면.
- 정근식, 「식민지검열과 '검열표준」, 『대동문화연구』 79집, 2012, 7~43면.
- 정근식, 최경희, 「도서과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찰의 체계화, 1926~1929」, 『한국문학연구』 30, 2006. 6, 103-169면.
- 채호석, 「검열과 문학장 : 1930년대 후반 한국문학에서의 검열과 문학장의 관계양상」, 『외국문학연구』 27, 2007. 8, 309-334면.
- 최수일, 「1930년대 미디어 검열에 대한 독법의 문제 - 『조광』의 '비문자표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1, 2013, 86-111면.
- 한만수, 「1930년대 검열기준의 구성원리와 작동기제」, 『동악어문학』 47, 2006. 8, 279-309면.
- 한만수, 「1930년대 문인들의 검열 우회 유형」, 『한국문화』 39, 2007, 227-254면.
- 한만수, 「식민지시기 검열의 드러냄과 숨김」, 『배달말』 41, 2007, 203-231면.

<Abstract>

The Cognition of Censorship after the disbandment of KAPF

Kim Jun-hyu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aspects of the cognition of censorship after the disbandment of KAPF. The fact that censorship and censorship agents are imperfect and divided is an important premise of this study. Just as the symbol “independence” was not censored in the 1930s, the name “Lenin” was not subject to censorship either, censorship takes on a fairly complex aspect when specifically identified. The standard of censorship is not published in a complete form, such as “these symbols and expressions will be censored”. Furthermore, censors who create censorship standards in such a complete form are very rare. As a result, writers try to avoid censorship through their own and subjective judgment by using the limited examples of censorship. As a result, ‘censorship recognition’ and ‘self-censorship’ act as important variables in creation.

The dissolution of the KAPF served as an important standard of censorship for writers of the time as well as those of the KAPF. The dissolution of the KAPF was a symbolic event in this regard, which influenced not only socialist literature writers but also other literary activities as a factor of censorship. And the the cognition of censorship established itself as an object of clear substance that was incomplete but widely shared by publishers and literary judges, triggering “self-censorship”

and “revision” of those in the literary arena.

Key words: KAPF, Self-censorship, adaption, the cognition of censorship,
literary media

투 고 일: 2021년 8월 31일

심 사 일: 2021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9월 23일